

충청북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9년 12월 9일
- 회부일자 : 1999년 12월 9일

3. 제 안 이 유

-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명칭 및 사무관장 부서를 조정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
- 일부 사무를 시·군·출장소에 위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.

4. 주 요 골 자

<경 제 과>

- 직업안정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
 -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등 8개 사무 삭제

<자원관리과>

- 전기사업법,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등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
- 석탄사업법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방법 변경
 - 석탄가공업의 등록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등 5개 사무

<보건위생과>

- 결핵예방법 등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

<축 산 과>

- 축산법, 가축전염예방법, 어선법 등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

<안전관리과>

-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신규 위임
 -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·시정 조치 등 11개사무
- 하천법,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

<총 무 과>

- 별표 4의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 임용권한중 일부사무 환수
 - 지방연구관·지도관의 전보권 위임대상에서 제외

5. 검토내역 및 의견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(안)을
검토한바,

- 본 조례(안)은 '99. 9. 7 개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와
직업안정법 등 10개 법안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,
-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의거 주민 편의 및 행정 능률 향상을
위하여 일부 사무를 시·군·출장소에 위임하려는 것으로

○ 부서 명칭 변경은

- 재정과를 "재무과"로,
- 보건과를 "보건위생과"로,
- 교통정책과를 "교통도로과"로 변경하려는 것이고
- 환경관리과를 "환경과"로
- 재해대책과를 "안전관리과"로

○ 권한 위임사무중 소관부서 이관은

- 사회복지과 소관의 아동의 후견인 선임, 해임 청구 등 4종을
여성정책관실로
- 환경위생과 소관의 토양 정밀 조사 등 6종을 환경과로
조리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등 5종을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하고
- 도로과 소관의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관련 사항 등
5종을 교통도로과 소관으로 하려는 것임.

○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은

-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시·군 권한 위임사무이던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허가 등 8개 사무를 시·군 사무로 변경하고,
석탄사업법 개정으로 석탄가공업관련 업무가 시·도 사무로
변경됨에 따라 시·군에 조례로 위임하려는 것이며,
- 전기사업법,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
전염병예방법 및 동 법 시행령과 결핵예방법
축산법,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동 법 시행령과
어선법, 하천법,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에 따라
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-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중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지방
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 보수·시정 조치 등 11개 사무를
시·군·출장소로 신규 위임하고
-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 임용권한중
지방연구관, 지도관의 전보권을 타 직속기관·사업소와의 형평성을
위하여 위임 대상에서 제외 시키려는 것임.

본 개정조례(안)은

직제 조정과 법령개정으로 현실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 이기는
하나

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·보수·시정 등 11개 사무의
신규로 위임과

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 임용권한중 지방연구관, 지도관의
전보권의 환원에 대해서는

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.